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‘98년 폐지된 5개 보건진료소 중 자산, 오천 보건진료소에 대한 명칭, 위치,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이 [별표1]에 남아 있어 해당내용을 삭제하고자 함.

- ‘98년 5개 보건진료소 폐지(명포, 마월, 봉학, 오천, 자산)
 ⇒ ‘03년 3개 보건진료소 복원(명포, 마월, 봉학)
- 수륜면 오천보건진료소 : ‘14.10.08 건축물말소
- 벽진면 자산보건진료소 : ‘16.10.12 공유재산관리전환 ⇒ 주민복지과

3. 주요내용

○ 폐지된 보건진료소 내용 삭제(안 별표 1)

명 칭	소 재 지	관 할 구 역
벽진면 자산보건진료소	성주군 벽진면 자산4길 20	자산1,2리, 운정2리
수륜면 오천보건진료소	성주군 수륜면 오천길 70-10	오천1,2리, 계정1,2리

⇒ 13개 보건진료소 중 2개 보건진료소 삭제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기　　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[붙임]참조
- 규　제　심　사 : 기획감사실 협의
- 성 별 영 향 평 가 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'98년 폐지된 5개 보건진료소 중 복원되지 않고 폐지된 상태인 수륜면 오천보건진료소와 벽진면 자산보건진료소를 삭제하고 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도로명주소가 불일치하는 9곳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검토결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